

19세기 조선의 국가, 법, 사회

제30회 월례발표회 자료집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김백철,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일시 : 12월 23일(금) 15:00 ~ 18:00

○장소 : ZOOM 회의

목차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김백철, 계명대학교 사학과 교수)..... 1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2016)..... 11

이 자료집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C2A02093536)

법치1)국가 조선의 탄생

김백철(계명대)

1. 고려말-조선초 사회적 배경

유교적 정치이념의 현실세계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말-조선초를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의 개국은 유교를 정치이념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가 열린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새로운 이념에 의한 사회구조의 전환은 여전히 유효한 설명 방식이다. 하지만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는 정치세력의 등장이 곧바로 사회 전반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아니었다. 유교이념이 사회 전체로 확대되어 나가는 데는 수많은 계기적 요소와 상당한 세월이 필요했다. 조선사회의 지향점이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여 점차 뚜렷한 상을 그려냈다.

14세기 고려는 새로운 운명의 기로에 서 있었다. 고려초기 규범과 제도를 지칭하는 조종성헌(祖宗成憲)은 유명무실해졌으며, 무신란과 원간섭기를 거치면서 왕실의 권위나 황제국체제를 지향했던 고려의 정체성도 상당 부분 희석되었다. 무신정권의 종식과 조정의 출륙환도에 사실상 원(元)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였기에 이제 왕실은 원이라는 변수를 주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려의 국왕은 원황실의 부마이자, 심양왕, 정동행성의 승상 등의 복합적인 지위를 모두 겸할 때에만 온전한 군주로서 국내 통치가 가능하였다. 이는 사실상 군주의 보위도 현존하는 강대한 원제국과의 연계 속에서만 지탱되었음을 의미한다.

신료들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고려 조정에 출사한 다수의 신료는 어떠한 형태로든-원 조정에서 벼슬을 했거나 원에 유학을 했거나 원에 사신을 다녀왔거나-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원을 매개로 한 지식인들은 몽골패권하 동아시아질서를 부정할 수 없는 세계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 이는 대몽항쟁기 저항의식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송대 주희(朱熹)가 집대성한 성리학은 당대에는 이단으로 몰려 외면당하였으나, 모순적이게도 몽골이 세운 원에서 관학으로 공인되었다. 따라서 고려에서 수입한 성리학은 원제국 질서를 뒷받침하는 온건한 사상에 불과하였다. 특히 원의 과거제도는 고려의 과거 출신자에게 지방시에 해당하는 성시(省試) 합격을 인정하여 바로 대도(大都, 연경燕京)에서 시험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었다. 이를 통해 고려의 과거 급제자는 원나라에서 벼슬을 얻어서 천자의 신하로 군림할 수 있었다. 마치 고려국왕이 몽골 황실과의 유대 속에서 부마와 정동행성의 승상, 그리고 심양왕 등의 복합적인 지위를 누렸던 것처럼 고려의 유자들도 유사한 행보를 밟았다. 그러므로 원의 질서에 대한 부정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공민왕대에 들어서면서 원과의 직접 소통이 컸던 만큼, 무너져가는 원에 대한 정보도 시시각각으로 위정자들에게 전해졌다. 14세기 중엽 동아시아는 내우외환에 대격변기를 겪고 있었다. 몽골제국은 동서 교역로를 장악하는 데서 생기는 막대한 통상 이익으로 국가재정을 충당하고

1) 서구법학사에서 ‘법치주의(rule of law)’는 17세기 영국의 명예혁명전후에 의회가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국왕조차 법의 지배하에 있음을 주창한 것이며, ‘법치국가(Rechtsstaat)’는 19세기 독일이 통일 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찰국가론과 대비하여 국가는 법으로 구성되어있고 법의 집행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국가주도 법치사상이다. 그러나 법치(法治) 전통은 로마나 당대(唐代) 이미 종합법이 집대성되었을 정도로 유구하였으므로, 유럽에서 유독 제국주의(帝國主義)에 성공하여 근대 패권을 장악한 나라들을 기준으로 법치의 성립여부를 논하는 것은 협소한 시각이다.

있었다. 하지만 제국의 번병(藩屏)을 이루던 4개의 한국(汗國)이 차례로 무너지자, 초원의 길, 비단길, 바닷길 등의 교역로들도 하나둘씩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재정수입이 현격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비를 줄일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이에 국내 농민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으며 이는 농민봉기로 이어졌다. 설상가상으로 왕위계승전마저 벌어져 대칸이 다스리는 몽골제국의 심장부인 원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더욱이 중국 내 가장 큰 세력을 형성했던 홍건적은 심지어 3개 성(省)을 장악하고 국호까지 선포하였을 정도였다. 공민왕 3년(1354)에는 원나라에 원정군 2,000여 명을 보내야만 했을 정도였다. 역설적이게도 토벌에 참여한 고려군이 귀국하자, 기울어져가는 중원의 정세가 여과 없이 국내에 퍼져나갔다. 공민왕은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여 먼저 원과의 일정한 거리 두기를 시도하였고, 반신반의하던 신료들도 이제는 원을 버려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였다. 국왕은 원의 간섭 없이 왕실의 존엄을 회복하려고 하였고, 신료들은 기울어져가는 원 대신에 자신들의 권력을 지탱하게 해줄 새로운 무언가를 열심히 찾고 있었다. 당시의 권문세족은 부원배의 소탕에 동조함으로써 당분간은 국왕의 편이 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하지만 권문세족은 언제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입장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었다.

공민왕대 반원정책을 상징하는 군사행동은 양계에서 동시에 수행되었다. 한편으로 공민왕 4년(1455) 북계의 최북단에 병력을 집중시키고 원의 파사부 3참(站)과 압록강 서쪽 8참을 기습·공파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공민왕 5년(1356) 잃어버린 동계지방 수복전을 개시하여 쌍성총관부가 통치하던 동북면을 탈환하였다.

그러나 홍건적의 출현은 고려에게도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 중원에서 쫓겨난 홍건적이 다시 식량을 찾아 고려로 남하하였다. 공민왕 8년(1359) 1차 침입 때는 서경을 잃었으며, 급기야 공민왕 10년(1361) 2차 침입 때는 개경까지 함락당하고 말았다. 국왕은 한때 복주(안동)까지 파천하였으나, 공민왕 11년(1362)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약 20만 명의 고려군을 집결시켜 총반격 끝에 개경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왕의 측근세력 대부분이 희생되었다. 공민왕초기에 유학자들은 힘이 없었다. 국왕은 약 1세기동안 견고하게 작동하던 원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생사를 같이할 수 있는 인사들을 필요로 했다. 극소수의 측근세력만이 국왕의 개혁정치를 도와 수차례의 정변을 겪으면서도 개혁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공민왕의 친위세력이 와해됨으로써 일반 신민을 대상으로 하는 관료제의 재편이 시급했다.

이때부터 공민왕은 자신과 사적인 유대가 전혀 없는 인물들을 오직 공적만을 기준으로 발탁하여 새로운 관료제를 출범시켰다. 특히 수도탈환전 및 각종 변란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인 휘하 장수들을 대대적으로 포상함으로써 총 347명의 공신이 책봉되었다. 그동안 연줄이 없어 등용되지 못했던 하급 무신들이 최대 수혜자들이었다. 이들은 변란에서 세운 군공을 바탕으로 국왕의 충성스런 신하로 인정받아 권력의 틈을 빠르게 메꾸어나가며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그동안 원에서는 고려국왕의 폐위 칙서와 함께 많은 군사를 보내는 등 수차례 압박을 해왔으나 그때마다 공민왕은 원의 간섭을 실력으로 단호히 물리쳤으며, 그 물리적 기반은 견고한 군사력에서 나왔다. 공민왕은 기본적으로 병제 개혁을 통해서 농민을 군사로 입역시킴으로써 군역 자원의 토대를 확충하고, 더불어 모병을 확충하고 군공에 대한 철저한 포상을 제도화하여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하였다. 잦은 왜구침탈에 대한 토벌과 북방영토의 회복운동 등은 무장세력이 정계에 진출하는 데 주요 발판이 되었다. 특히 공민왕대 군공으로 지역에서 새로이 첨철직을 받거나 직사(職事)가 없는 한량관(閑良官) 등이 사대부의 모집단(品官)으로 형성되었다. 과전법에서 한량관리는 과전까지 지급받았다. 물론 이는 현 소유를 인정하는 수준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지역 세력을

양반 관료제 내로 흡수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수도가 함락당한 상황에서 군사를 모병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세력이 공민왕의 개혁정치에 우호적이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권문세족들은 지역에 관심이 없었지만 공민왕은 지역세력에게 첩설직을 제공하는 등 지방을 배려하고 있었기에 그 효과가 발휘된 것이다. 신왕조 개창의 주역인 이성계 역시 이때 출세 가도를 달린 장수였다. 이들은 가문을 배경으로 중앙정계를 장악하고 있던 권문세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신흥세력이었다.

환도이후 공민왕은 신돈을 전격적으로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재설치하여 적극적 개혁정책을 추진하였다. 이때 신돈은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통합한 도점의사사의 영사를 맡았다. 특히 『서경』에서 삼공을 상징하는 ‘논도섭리’라는 공신호를 받았는데, 이 호칭은 조선에서도 영상을 지칭했다. 사실상 정도전이 『경제문감』에서 주창하는 재상 정치론의 모델은 실제로 그가 비판해 마지 않았던 신돈으로 추정된다. 역설적이게도 정도전이 그린 이상적인 재상은 성현의 말씀을 존중하고 정사에 공평해야 하며, 인재등용에 사사로움이 없어야 하고, 군주에게 적극 간언(諫言)해야 한다고 했는데, 성균관의 복설, 신진사류의 등용, 전민변정도감의 설치, 노국공주의 영전(影殿) 공사 반대 등이 모두 이에 부합한다. 신돈은 공민왕의 배려로 왕과 동일한 의복과 의전을 받았으며, 사실상 섭정지위에 있으면서 오직 국왕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고 문·무 백관을 통솔하였다. 이는 정도전이 주창한 재상의 역할과 별반 다르지 않다.

공민왕은 스스로 원과의 관계를 끊고 조종성현을 회복한다는 기치하에 고려의 정체성을 새롭게 확립하기 위한 일련의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에 부원배의 소탕에 성공하고 권문세족의 일시적인 협력을 이끌어냈다. 군공을 장려하여 반원개혁을 수행할 물리적인 군사력도 확보하였다. 또한 성균관을 복설토록 함으로써 차후 원과의 연결 고리를 배제한 고려의 자생적인 지식인 양성에 돌입하였다. 공민왕대 육성된 신흥세력은 창왕-공양왕대를 거치면서 점차 실력으로 정치 정면에 나서서 국가 제도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이른바 신진사류와 신흥무장세력의 뿌리가 모두 공민왕대에 형성되었다. 또한 이전까지 명목상에 그쳤던 전민변정도감이 신돈의 등장으로 실제 구현되면서 불법적으로 탈점된 토지와 강제로 노비가 된 양민을 국가의 수세와 양역 자원으로 되돌리는 데 큰 효과를 보았다. 이것이 전제 개혁의 뿌리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민왕의 권위는 사후에도 발휘되어 대명외교론의 명분으로 위화도회군을 단행하는 근거가 되었으며, 이후 우왕, 창왕, 공양왕 등은 모두 공민왕비였던 왕대비(정비定妃 안씨安氏)의 교지로 폐위되었다. 그리고 태조의 즉위교서에는 공민왕이 후사없이 떠났다고 설명함으로써 자신이 공민왕의 정통성을 계승하였음을 우회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조선의 종묘에서조차 고려 공민왕의 사당이 설치되었고, 『고려사』 「세가(世家)」 중 ‘공민왕’의 분량은 장장 7권에 달하여 역대 제왕 중 가장 많다. 이러한 점들은 조선의 개국과정에서 공민왕이 차지하는 비중이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해볼 수 있는 단서이다. 공민왕이 제시하고 실천에 옮기 고자 했던 미래의 청사진은 이후 새로운 사회를 꿈꾸는 신흥세력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조선왕조의 출범은 약 반세기 이상 지속된 사회변혁 운동의 최종 결실이었다. 공민왕대에 새로이 제시된 국가상은 향후 위정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공민왕의 흥거로 신진사류만 남겨지자, 고려 초기의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하는 조종성현의 회복이라는 기치보다 아예 새로운 유교적 이상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제창되기에 이르렀다. 신진사류는 신유학의 경서를 자신만의 독법으로 연마하였기에, 근본주의 자적 성향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원제국치하 현실타협적 관학이었던 성리학은 이제 고려에서는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의 체제개혁 논리로 변모하였다. 이들은 구래의 원제국 체제에 얽매이지 않아서, 보다 자유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이상 국가를 갈망할 수 있었다. 맹

자의 향산론(恒産論)과 역성혁명 논리를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신유학자는 혁명세력으로 전화(轉化)함으로써 수차례 군주교체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다. 신진사류는 이제 고려라는 틀까지 버리고 중국고대 이상사회인 서주에 걸맞은 역사를 지닌 성인(聖人) 기자의 조선(朝鮮)을 국호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유교적 이상향의 모델을 적극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이라는 국가체제와 왕실위상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른바 황제국체제인 고려로부터 물려받은 신성한 왕실의 유산과 신진사류가 새롭게 주장한 유교적 이상사회의 청사진이 하나의 방향으로 귀결되기 시작했다.

2. 고려말 개혁과 신왕조 입법의 연관성

① 외교정책과 국경선의 재획정

고려말 시작된 일련의 개혁은 신왕조 개창이후까지도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이같은 과정을 몇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공민왕대 반원 개혁은 국경선의 재획정으로 나타났다. 우선 군사력의 재건을 통해서 북벌이 추진되었다. 공민왕 전반기 양계 수복과 압록강 유역 확보, 후반기 두 차례의 요심(요양, 심양) 공략은 모두 전격전(電擊戰)을 방불케 하였고 대승을 거두었음에도 요동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시켜 압록강 유역을 자연 방어선으로 삼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계는 청천강 유역, 동계는 철령이북의 6주 5진(쌍성총관부 관할 등주, 정주, 장주, 예주, 고주, 문주, 의주, 선덕진, 원흥진, 영인진, 요덕진, 정변진)에 불과하던 고려의 강역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한반도의 통치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동지역에 대한 원거리 공격도 감행하였다. 신돈집권기 이성계는 최영을 제치고 요심지역 공략의 최고사령관이었다. 더욱이 주원장정권이 최초로 외교관계를 수립한 나라가 바로 공민왕대 고려였으므로 양국은 우호 관계가 남달랐다. 공히 원나라에 대한 북벌을 진행하여 공동전선을 구축하였다.

이성계는 위화도회군으로 공민왕대 외교정책을 복원하고자 하였으나 정작 명나라의 지지를 얻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선왕대 외교정책은 조선의 대명외교 원칙에 시금석이 되었다. 북방민족의 침입에는 근거지를 공파하여 복속시키되,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의 자연경계선을 넘지 않았다. 이후 세종 15년(1433)·세종 19년(1437) 두 차례에 걸친 여진 정벌로 4군과 6진을 설치하여 두만강일대를 회복함으로써 압록강-두만강을 경계로 하는 한반도 국경선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성종 10년(1479), 성종 22년(1491)까지도 이 같은 원칙하에서 대규모 여진정벌정책이 지속되었다.

둘째, 국경선의 재획정은 지방통치체제의 재정비로 이어졌다. 북방의 여진족 토벌과 남방의 왜구격퇴로 국토가 재편되었다. 공민왕 19년(1370)부터 두 차례나 이성계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요심까지 공략하여 고려 유민 300여 호를 귀국시키기도 했다. 고려는 영토의 경계를 훨씬 북진시켜 압록강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국경선을 확정하였다. 또한 이 시기 왜구는 중국과 고려의 해안선 전역을 비롯하여 수로가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내륙 깊숙이 출몰하여 약탈하였다. 여말선초 전 군현에 방어를 위한 읍성이 발달하는 과정도 중세 유럽에서 마이킹의 침탈로 성곽이 발달하는 현상과 유사했다.

조선에 이르러 북방은 세종대에 4군과 6진이 개척되었다. 이로 인해서 우리 백성이 변방을 채우는 사민정책도 실시되었다. 사변관련 절목과 수교 등 각종 입법조치가 수반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입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일가족을 모두 변방으로 옮기는 전가사변형도 등장하였다. 『경국대전』 단계에서 3개 정도에 불과하던 이 형벌은 『대전후속록』에서는

대대적인 재조정 조치가 필요할 정도였다.

한편 남방은 무인지대였던 해안일대가 모두 수복되어 새로운 농경지가 확보되었다. 이에 『농사직설(農事直說)』로 대변되는 신농법의 보급과 저습지 개발이 추진되었다. 또한 치소가 거점 방어를 위한 산성에서 평지로 내려오자 관할 지역도 세분화될 필요가 있었으며, 국가의 중앙집권화 정책과 짝하여 관리의 파견이 확대되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속현이 거의 사라지고 모든 군현에 관리가 임명되었다. 이 같은 재편으로 고려시대 수십 차례 개정되었던 지방제도는 관찰사-부윤-대도호부사(또는 목사)-도호부사-군수-현령-현감 등의 체제로 『경국대전』 「이전」 「외관직」에 최종 등재되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

셋째, 백성이 모이는 읍치(邑治, 치소)가 평지로 옮겨오자, 여진과 왜구의 침탈로부터 백성을 보호할 읍성(邑城)의 축조가 이루어졌다. 변방과 해안지대부터 시작하여 전국 군현으로 확대되었다. 이것이 세종대에 대규모 축성이 이루어지는 이유였다. 또한 축성군의 생계를 보존하기 위해서 의창을 지어서 환곡을 적극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경제여건도 변화하였다. 조선전기 최대 규모의 환곡운영은 이 시기 조선통보의 유통이나 공법(貢法)의 제정과도 연관지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조선후기에는 대동법(大同法) 발효이후 상평통보(常平通寶)와 환곡이 적극적으로 운영되었다.

행정 치소의 이동으로 군사, 농법, 재정 전반이 변화하여 각종 절목과 수교로 반포되었다. 특히 세조연간 지역방어체제인 진관은 읍성이 축성되었기에 가능한 군사 제도였다. 동시에 이는 양계 지방의 군익도(익군) 체제를 전국의 영진군에 확대한 조치였는데, 공민왕대 양계 수복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정책이었다. 진관체제를 구성하는 절도사-절제사-첨절제사-동첨절제사(또는 만호)-절제도위로 이어지는 군령체계도 『경국대전』 「병전」에 등재되었다. 전국은 행정 체계 위에 군사 체계가 더해져서 각기 책임방어구역을 갖게 되었다.

② 토지개혁과 양인화정책

원간섭기에 전민변정도감은 유명무실하였으나 공민왕대 신돈의 집권기에 이르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 이 시기 전민변정도감은 백성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신돈은 성군관을 복설하여 신진사류를 육성하고, 요심 공략에 이성계를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신흥 무장 세력도 배후에서 지원하였다. 이들은 향후 개혁을 주도하였다.

첫째, 위화도회군 직후, 직질이 낮은 안렴사를 개혁하여 외방에 일도의 전권을 가진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하였다. 도관찰출척사는 중앙의 실력자 중에서 개혁파로 구성된 대간의 서경을 통과한 이들로 임명하였다. 이들은 강력한 권한을 바탕으로 권문세족이나 토호의 토지까지도 예외 없이 양전(量田)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양왕 3년(1391) 전국토지 결수의 조사가 완료되어 마침내 전시과를 폐하고 과전법을 반포하였다. 이듬해(1392, 공양왕 4, 태조 1) 신왕조가 개창되었으므로 사실상 토지제도 개혁으로 왕조가 교체된 것이다. 과전법은 국초 세제의 근간이었다. 이후 개혁은 지속되었다. 불교 적폐(積弊)를 조사하여 사찰이 지니고 있는 방대한 토지와 노비를 국고로 귀속시킴으로써 중앙 재정도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둘째, 공민왕대 전민변정도감은 억울하게 천인이 된 양인의 신분을 회복해주었다. 이 전통은 공양왕대 인물추변도감이나 태조대 노비변정도감을 통해 계승되었고, 태종대는 노비 소송(15,583건)의 폭발적 증대로 나타났다. 조정은 양인신분 변별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법사(法司)에서 들어주지 않는 경우 국왕의 특별 법정에서 직접 호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였다. 이것이 주로 '격고'로 지칭되는 신문고의 탄생 배경이다. 신문고의 상당수가 노비 소송(1,359건)에 관한 것이었으며, 노비 소송 중 과반이 양천 변별 문제였다. 세종대

이후 신문고 활용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도 노비 변별이 일정 부분 해소되었기 때문이다.

③ 신분구조의 재편과 사회변동

신왕조개창이후 백성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농업이 장려되었다. 변경이나 해안의 토지 확장, 저수지의 확보, 신농법의 보급 등이 추진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수령칠사(守令七事)를 비롯하여 각종 진휼책으로 구현되었다. 또 전제 개혁과 양인 확보는 농민의 모집단을 늘렸다.

첫째, 신양인의 탄생이다. 그 사례를 유형화해보면, 노비 소송을 통해 신분을 회복한 경우, 국가가 신법을 입안하여 양천교혼 소생에게 양인신분을 귀속시킨 경우, 조정의 시책으로 특수지역의 종사자에게 일괄적으로 신분을 부여한 경우[신량역천], 국경선이 확장되면서 귀부한 여진족을 백성으로 재편한 경우[신백정] 등이 해당하였다.

특히, 신백정(신양인)은 군현에서 독립적으로 살면서 완전히 일반 백성에 편입되지는 못하였다. 그래서 주로 도축(屠畜)을 불법으로 일삼는 거팔장이 되었다. 농사에 필요한 우마를 도살하는 것을 금단하였으나 쉽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초기 실록에는 우마도살에 대한 처벌 사례가 상당히 많이 실려있고, 이러한 경우 어김없이 신백정 재편문제와 연관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신백정을 군역에 포함시켰고, 『경국대전』 ‘재백정단취’처럼 백정을 관리하는 규정이 마련될 정도였다.

둘째, 양천교혼 소생의 신분귀속 논의는 자연스럽게 서얼허통 문제로 연결되었다. 국초에는 양반 관료군의 우대 조치로 첩자(妾子)에 대한 관직진출이 허용되었다. 신왕조개창에 참여한 이들 상당수가 한계(限界)신분 출신이므로 국초에 서얼 차별은 거의 없었으나 양반 사회가 정착되자 신분 의식이 높아지면서 서얼에 대한 차별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경국대전』의 항목으로 ‘천처첩자녀’가 설정될 만큼 관직진출 범위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양인과 양반관료를 같이 취급할지 여부를 두고 성종-중종대 수십년간 논란이 일어났고, 군역 확보를 위한 양인화정책의 추진으로 양인의 천처첩자녀까지 포괄하는 조치가 『대전속록』과 『대전후속록』에 점진적으로 반영되었다.

셋째, 사원경제의 혁파 과정에서 승려의 자격도 제한하였다. 유교적 윤리 보급을 내세웠으나 실제 폐단으로 적시된 것은 승려의 명백한 범죄(간음, 축재)에 관한 문제였다. 이에 도첩의 발급을 엄격히 하고 정전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사사의 전민 제한과 도첩제는 공민왕 초반 개혁 조치로 본격화된 제도였다. 하지만 점차 피역하기 위해서 시험이나 정전을 치르지 않고 중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피역 행위는 호불의 군주를 자처한 세조조차 분노할 지경이었다. 이 과정에서 부녀자의 사찰출입 금지, 승려의 도성출입 금지, 도첩제 발행과 폐지 등이 논란이 되었고, 이에 관한 다양한 입법 활동이 일어났다. 승려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승군으로 재편될 때까지 공식적으로 역의 부담이 없었으므로 피역을 도모하는 이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넷째, 시노비(寺奴婢)의 등장이다. 사원경제의 해체로 사사 노비가 속공됨으로써 갑자기 각사에서 부리는 공노비의 수가 늘어났다. 태종대부터 외방의 혁거(革去)된 사사노비가 토지 2결 미만을 경작할 경우, 포공(布貢, 면포로 납부하는 신공)을 허락한 사례가 확인된다. 이미 제한적으로 현물로 노동력을 대신하도록 허락한 것이다. 세종대에 이르면 외방의 공노비가 상경하여 중앙의 각사에 입번(入番)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폐단이 폭넓게 논의되었다. 점차 선상노자의 대립(代立)허용 문제로 확대되었다. 결국 선상노자의 자대(自代)는 다른 신역(身役)의 대립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이는 15세기 후반-16세기 조용조(租庸調)의 금납화(金納化) 현상의 단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급속한 조세제도의 변화가 입법 논의로 나타났다.

다섯째, 화폐유통이 적극 추진되었다. 이것은 화폐제작의 차익(seigniorage) 극대화과 화폐

제작소(mint)의 일원화를 도모한 조치로 이해된다. 이에 『경국대전』 ‘국폐’ 항목의 탄생 과정도 주목된다.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태종-세종연간 저화와 동전 유통이 강력히 추진되었으나 큰 공효를 보이지 못하고 성종대이후 오승포 체제로 회귀하였던 상황을 경제가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오히려 관주도의 계획경제가 이미 15세기 중반부터 균열을 보였고, 16세기 세계경제에 근접함으로써 폭발적인 민간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생긴 긍정적 변화가 아닌가 한다. 민간경제의 활성화를 대변하는 오승포가 당시 동아시아 은경제의 상업 유통망과 더 연관되기 쉬웠으며, 부세의 금납화와 더불어 새로운 사회경제 구도가 출현하였다. 이는 저화의 민간 유통을 확대시킨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관에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부상대고의 축적과 매매를 모두 금단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같은 시기 명 역시 보초를 포기하고 은본위경제로 전환하고 있었다. 양국의 법정화폐(지폐)는 민간의 신뢰를 얻지 못하여 명목가치마저 폭락하였으나, 오히려 현물화폐(면포·은)는 실질가치가 보장되어 대규모로 유통되었다. 곧 조정의 화폐정책의 일정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간경제는 또다른 방향의 성장을 지속시켜 나간 것이다.

④ 관료체제의 재정비

공민왕대에 중앙관료층이 대거 교체되자, 실력으로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졌다. 첫째, 성균관의 복설과 과거의 설행이다. 과거시험체제를 재정비하였고 이것이 『경국대전』 「예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다. 공민왕 10년(1361) 홍건적의 2차 침입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신흥 무장 세력의 토대가 형성되었다. 이것이 향후 무과 설치의 계기였다. 더욱이 무신 세력의 과도한 성장에 균형을 맞추고자 문신 진흥책의 일환으로 성균관을 복설하고 신진사류를 등용하였다. 이는 지원 세력이 미약했던 군주가 오랫동안 권문세족이 독점해온 권력을 개방함으로써 절대적인 지지 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미 공민왕 원년(1352) 정방을 혁파하여 인사권을 전리사(이부)와 군부사(병부)에 귀속시킨다고 선포함으로써 문·무 양반 관료 체제의 구상이 본격화되었다. 이는 태종 5년(1415) 관제 개혁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둘째, 관료사회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외방에서는 왜구나 홍건적 토벌 등의 군공을 세우면 첩설직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고려 말 첩설직은 고위직은 물론이거니와 공·상·천예에게까지 개방되었으며, 공·상·천예는 조선에서 잡직 진출이 허용되어 관료군 내로 편입될 수 있었다. 이들은 신분이 미천했기 때문에 이들의 관직 진출에 법리 논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곤 했다. 또한 중앙의 관리를 지낸 후 낙향한 이들은 유향품관(留鄕品官)을 자처하였고 실직이 없는 이들은 한량관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들 첩설, 품관, 한량 등은 실록에서 때로는 병칭되거나 중의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지방에 거주하는 사대부의 모집단을 가리키는 데 큰 차이가 없었다. 과전법에 서 한량관리에게 소유한 토지를 감안하여 과전을 지급하거나, 태조-태종대에 각 군현의 품관, 한량 등을 폭넓게 조사하여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는 교서 등은 바로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 또한 사림이 중앙정계에 진출하던 시기에는 유향소복립운동 등도 모두 유향품관의 문제와 연동되어 나타났다. 『경국대전』을 살펴보면 고려의 문·무산계를 개혁하여 무반과 문반에게 각기 서로 다른 품계를 주었으며, 외방의 토관직과 중앙의 잡직까지 품계를 부여하여 관인층에 포함시켰다. 게다가 종친과 의빈의 관계까지 더하면, 조선의 품계는 고려보다 약 2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것은 여말의 다양한 계층이 사대부의 모집단에 포섭된 결과였다.

셋째, 청요직의 견제 장치가 마련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위화도회군 직후 도관찰출척사를 파견하였는데, 『사기』에서 서백(西伯)에게 궁시와 부월을 준 고사를 차용하여 부월과 교서를

내렸다. 특히, 도관찰출척사는 대간의 서경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전제개혁에 동참하는 인물을 가려 뽑을 수 있었다. 곧 신진사류가 장악한 언관권이 혁명 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한 것이다. 이는 고려의 양사가 조선에 계승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정도전의 『조선경국전』에도 이상적인 국가기구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흐름이 향후 사림의 정계 진출과 맞물려 상부의 대신-재상과 하부의 청요직신하가 각기 대등한 견제 구도를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구입법, 면신례, 분경금지 등이 제도화되었다. 분경 역시 위화도회군 직후 개혁 입법 중 하나였다.

넷째, 각 아문 장관의 책임제가 시행되었다. 태종대 중앙에 의정부를 설치하여 국정 전반을 관장하게 함으로써 『서경』 「주관」의 삼공을 방불케 하였다. 육부(六部)의 정3품 전서를 정2품 판서로 직질을 높이고 국가의 대소사를 육조에 분속시켰다. 『경국대전』에는 14개의 특수 아문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아문이 육조의 속아문으로 배치되었다. 더욱이 2품 이상 재신은 국가에서 각종 우대 조치와 신분 보장을 하였고, 중앙은 육조의 육경이, 외방은 팔도의 방백이 각각 책임지도록 하였다. 실제로 육조판서는 속사와 속아문을 합쳐 86곳을 관장하였으며, 팔도 관찰사는 352개 읍과 역을 관할하였다. 이 같은 중앙과 외방의 직질 격상과 전권 위임은 유가의 이상적인 정치 모델인 『서경』 ‘삼공’, 『주례』 ‘육관’, 『사기』 ‘방백’의 체제를 원용한 방식이다. 더욱이 16세기에 사림의 진출이 확대되면서 조선의 아문과 관직을 유가의 표현을 빌려서 지칭하는 경우가 잦아졌으며 공문서에조차 이칭이 굳어졌다.

⑤ 사법제도의 개혁

조선 초기 사법 개혁의 단서는 공민왕 즉위 초에 천명한 전민사송 절차의 재정비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개혁 운동으로 점차 구체화되었다. 첫째, 사법권의 집중과 인명(人命) 중시이다. 창왕대 사죄(死罪)는 1차로 도관찰사가 전법사에 보고하고, 2차로 전법사가 살펴서 도평의사사에 보고하며, 3차로 도평의사사가 살펴서 국왕에게 아뢰면, 4차로 국왕이 검토한 후 전법사에서 시행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발전하여 공양왕대 사형수에 대한 삼복(三覆) 실시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경국대전』에 명문화되었다.

둘째, 홀수 조치와 사회적 약자 보호이다. 먼저 옥의 환경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였는데, 공양왕대부터 전옥에는 의관을 전담 배치시켜 병든 죄수의 병세를 돌보도록 하였다. 이 조치는 세종의 하교로 되살아났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보호이다. 중국법과 아국법의 전통을 모두 참용하여 노약자와 부인 범죄에 대한 감형 조치를 실시하였다.

셋째, 벌리 연구의 심화이다. 당률의 규정보다 사면 대상을 구체화하였는데, 이러한 조치는 동시대 명률의 변화 양상과 유사한 궤적을 그렸다. 또한 당률과 명률의 ‘십악’에 필적하는 범죄 유형의 추상화는 ‘강상죄’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넷째, 소원 제도가 발달하였다. 양인 신분 회복 운동은 신문고로 이어졌다. 격고의 폭증은 다양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 『경국대전』 「형전」의 ‘결옥일한’과 ‘소원’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 ㉡ 부민고소 허용과 원악향리 처벌 논쟁의 단서가 되었다. ㉢ ‘격고’는 ‘격쟁’으로 재편되었다. ㉣ 양천분간과 재심청구는 ‘사건사’와 ‘신사건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 삼한(三限), 삼도(三度), 삼년(三年) 등 결송 절차를 체계화하는데 기여하였다.

이상의 입법내용은 명률의 개혁안과 유사하지만, 대개 명률 도입이전부터 고려가 독자적으로 당률을 개정하여 추진한 사법개혁에 해당한다. 곧 14세기 후반 고려와 명이 공히 형정 개혁에 나서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고려 공민왕대부터 추진된 일련의 개혁정책은 신왕조개창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정치, 경제, 사법, 군사 등 다방면에 걸쳐 유교적 이상사회의 청사진을 설정하고 이것을 조선의 현실사회에서 구현해내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

하였다. 특히 이같은 실천노력이 모두 입법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다.

3. 동아시아의 당제(唐制) 연구와 세계체제의 변동

조선시대 국법체제의 근간은 고려말 사법개혁에서 비롯되었다. 고려의 형정은 집권세력에 따라 자의적으로 집행되었다. 불의한 현실에 대한 통렬한 비판 의식 속에서 조선 건국자들은 만세불변의 제도를 법으로 남기고자 하였다. 고려말 개혁입법은 『경제육전』에 반영되었다.

멀리는 삼국시대 전통에서부터 가까이는 고려시대 입법취지가 직·간접적으로 계승되었다. 이 시기 당률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는 가운데 원과 명의 사법제도 역시 차차 도입되었다. 특히 14세기에 주목되는 바는 명과 고려 말의 위정자들이 거의 동시간대에 당률 연구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명과 조선의 건국세력이 꿈꾸었던 당(唐) 초기 국가 모델과도 부합한다. 건국세력은 각종 유교경전을 통해 고제(古制)를 회복하고자 하였으나, 이상을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에 세계 제국을 건설한 당의 문물제도를 연구함으로써 유교적 이상사회를 현실 사회에 구현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동시간대 유럽에서 그리스·로마 고전에 주목하던 르네상스운동에 비견해볼만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초기 농업국가 경제모델이 주목받았다. 양국의 위정자들은 몽골제국이 구축한 유라시아의 자유통상경제망이 대외정세에 크게 좌우되면서 급기야 왕조의 멸망까지 초래한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이에 외부의 변수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립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경제모델에 주목하였다. 유학자들 공히 자유무역의 막대한 통상 이익은 황실·왕실이나 부상대고에게만 돌아가고, 일반 농민에게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으며, 몽골제국의 변방을 이루던 울루스(Ulus, 汗國)의 붕괴가 동서교류망의 상실로 이어져서 국가의 중앙경제가 파탄이 났다고 보았다. 따라서 명에서는 해금령과 사행제한 등과 같은 방식으로 대외무역 의존도를 축소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조용조(租庸調), 균전제(均田制), 부병제(府兵制) 등 당초기 소박한 자립경제를 이상적인 국가상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당의 전-예-율의 삼법체제가 명과 조선 양국에 적극 도입되었다. 당대 『당률소의』(653), 『대당개원례』(712), 『당육전』(738) 등은 후속 왕조에서 계승되지 못하고, 명과 조선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부활하였다. 명의 『대명률』(1367-1397), 『대명집례』(1369-1370), 『대명회전』(1509-1587), 조선의 『대명률직해』(1395), 『국조오례의』(1474), 『경국대전』(1460-1485?) 등이 바로 그것이다. 더욱이 고려말 당률 연구를 통해서 사법 개혁의 근간이 마련되었다. 실례로 사법권의 중앙 집중, 삼복의 실시, 사면 대상의 재조정, 신문고 및 소원제도의 정착, 십악과 강상범죄의 유형화, 홀수조치,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이 모두 당률을 토대로 추진한 사법 개혁이었다.

셋째, 당의 국가제도 및 관료체제의 모델이 적극 원용되었다. 당대 완성된 조종 묘호는 고려 초에 도입되었다가 원간섭기에 중단되었고, 조선에서 다시 부활하였다. 또한 한·당의 제도를 참용하여 고려에서는 목·대도호부·중도호부·대도독부를 설치하였는데, 조선에서도 목·대도호부·도호부로 계승하였다. 당대(唐代) 등장한 도(道)·절도사·관찰사는 고려시대부터 도입되었고, 조선의 『경국대전』에서 지방제도·군정장관·민정장관으로 최종 등재되었다. 아울러 당에서 완성된 문·무산계 역시 고려에서 수용되었다가 조선에 이르러 비

로소 중국과 동일하게 문신과 무신이 각각 문산계와 무산계를 받는 형태로 정착되었다.

넷째, 당대 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 과정이 동아시아에 재현되었다. 당은 7세기 개창 당시에는 소박한 경제구조로 출발하였으나, 8세기에 접어들어 이슬람세계와 연결되면서 대규모 동·서교류의 시대를 열었다. 이미 수백년 전에 당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던 농업입국의 꿈이 명과 조선에서 유지될 리 만무하였다. 이에 15세기 중반부터 명과 조선에서는 조정에서 주도하는 강력한 통제경제가 붕괴되었고, 명나라는 은본위 경제로, 조선은 부세의 금납화로 각각 변화되고 말았다.

더욱이 급격한 사회변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상황에 부합하는 입법의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16세기 대항해시대에 접어들자, 아프리카나 유럽뿐 아니라 아메리카까지도 실버 로드(silver road)가 연결되었다. 중국은 물론이거니와 조선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체가 세계은경제에 급속히 편입되었다. 이것이 조선초기에 반포한 『경제육전』(1397)이 『속육전』(1399-1435), 『경국대전』(1456-1485?), 『대전속록』(1474-1492), 『대전후속록』(1514-1544) 등으로 확장되지 않을 수 없었던 주요 요인이었다.

14세기말-15세기전반 사법개혁은 유교적 이상국가 건설을 대전제로 공정한 형정(刑政)의 실현과 공민(公民)의 확대를 통한 백성의 안정과 국가체제의 일신(一新)에 초점을 맞추어, 법치주의국가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반면에, 15세기 후반-16세기 입법운동은 오랜 법리논쟁을 통해서 사회경제적 변동에 부합하는 부세체제와 신분제도를 재편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경국대전』, 『대전속록』, 『대전후속록』 등의 편찬 과정은 사회변동에 뒤쳐진 제도를 미시적으로 하나하나 보완하는 형식을 띠었다.

따라서 조선의 국법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세기이래 동아시아의 변혁, 특히 사회·경제적 변동과 정치·사상적 전환 등을 폭넓게 고려하면서 입법취지에 다가갈 필요가 있다. 곧 조선의 국법은 한갓 행정 일반에 국한되지 않고 당대(當代) 역사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거울로 자리하였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전기 국법체계 형성사』, 이학사, 2016

김백철,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 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이학사, 2016)*

김영석**

통상적으로 현대 한국 법체계의 연원은 구한말 일제에 의해 타율적으로 수용된 서구 법제와 관련하여 논의되며, 그 이전 시기의 유교적 법제의 특성에 대한 객관적·구체적 분석과 평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지만 조선에서도 유교이념을 기반으로 한 특유의 법사상이 사회를 지탱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발현되었음은 실록 기사, 각종 法書의 편찬 과정, 그리고 법조문의 적용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고려 말 새로운 질서의 수립을 목표로 신진사대부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체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건국 세력은 고려왕조의 말기적 혼란의 원인을 명시적인 성문법의 부존재와 일관성이 결여된 법집행에서 찾았다. 이들은 주자학을 정치 이념으로 한 이상향을 실제로 구현함으로써 문제

* 본 서평은 평자와 김백경(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수료)·이승현(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이 각각 작성한 서평을 종합하여 완성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평자의 책임이다.

** 이주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사후연구원; daehangugin@naver.com

를 해결하고자 했으며, 당률·명률을 수용하면서도 조선의 현실을 반영한 국법체계를 형성하였다. 《經濟六典》부터 《經國大典》, 나아가 續錄類의 편찬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과 사회변동에 따른 법조문의 적용·보완사례는 이를 입증하는 근거이다.

저자는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조선 전기 국법체계 형성사-』에서 총 6장에 걸쳐 조선 전기의 국법체계 형성 과정을 고찰하면서, 법적 안정성 내지 ‘법에 의한 통치’로 국왕의 통치행위조차 일정 부분 구속·견제하였던 부분을 법치주의적인 요소로서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국대전》을 비롯한 법제자료 연구가 개괄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 본격적인 연구로 접어들지 못했음을 강조하며, 조선 전기 법제를 아우르는 구체적인 연구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제1장에서는 여말선초의 전환기에 유교적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신진 세력의 형성과 이들에 의한 새로운 국가 체제 형성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민왕은 유교적 정치 이념에 기틀을 둔 반원정책을 통해 조종성현의 회복을 도모하였다. 특히 기존 정치 세력과 무관한 신돈이 재상정치체제 하에서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재정확보와 권문세족 세력약화를 도모하였으나, 국왕의 신임에만 의존한 취약한 정치적 기반으로 인해 결국 실각하였다. 한편 공민왕대의 개혁을 바탕으로 정계에 진입한 신진사류는 공민왕 사후 西周의 유가적 이상사회를 현실사회에서 구현하고자 역성혁명을 통한 신왕조 개창을 계획하였다. 이 과정에서 《周禮》는 조선의 정부체제·법제·용어 등 국법체계 전반에 걸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선 전기 법전 편찬의 경과를 소개하고, 형법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할 《大明律》의 도입·적용에 대해 다루고 있다. 《경제육전》은 수차례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면서 ‘태조의 성헌을 함부로 개폐할 수 없다’는 祖宗成憲尊重主義를 확립하였으나, 개별적인 사안을 규정하는 수교집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때문에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추상적인 법전으로서 《경국대전》이 반포되었으며, 이후 《大典續錄》·《大典後續錄》·《經國大典註解》가 보완을 목적으로 편찬되었다. 고려 말 《至正條格》·《議

刑易覽》과 더불어 도입된 《대명률》은 조선의 실정을 반영하여 몇몇 규정이 개정·신설되어 쓰였다. 강상죄는 사면·수속 혜택에서 제외되었으며, 유형별로 그 처벌의 정도가 다양하였다. 奴主·부부·간음의 세 가지가 주로 문제가 되었으며, 실록 기사에서는 각각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처벌 결과를 기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행정 운영체계를 고찰하고 절도죄, 刑獄의 관리, 재판절차를 고찰하였다. 역성혁명 세력은 자의적인 통치가 고려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보고 법에 따른 체계적인 행정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입법 시 新法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각종 절차를 마련했으며, 범죄가 사형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 이상 죄를 심사(三覆)하여 결정하도록 하였다. 절도죄는 명률에 입각하여 강력히 처벌하였으며, 특히 세조대에 嚴刑이 가해졌으나 성종대는 법문 간의 모순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다소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절도의 경우 사면 이전의 행위까지 합산하여 무겁게 처벌하였으며, 刺字刑·斷筋刑을 적용하는 문제도 수차례 논의되었다. 欽恤을 위해 형옥 관리와 재판절차에 대한 논의와 보완도 이루어졌다. 典獄의 위생상태·수형자의 처우 등을 중점으로 살피고 죄의 경중을 심사하여 석방하였는데, 특히 이상기후·국왕의 질병 등의 사유로 죄수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 민감한 이해관계가 얽힌 노비소송의 경우 소송의 폭증을 막기 위한 각종 소송 제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소송제한 횟수는 3회가 원칙이었으며, 기한은 3년으로 두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하려 하였다.

제4장에서는 왕조교체기의 사회윤리 체계가 변동하는 과정을 불교에서 유교 이념으로의 전환과정 및 신분계급 간의 법규와 관련하여 설명하고 있다. 불교 억제책·再嫁 문제·처벌의 감경 등은 고유의 전통과 명률의 수용, 유교적 윤리 의식의 확산 기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였다. 효자·열녀 등의 선행에 대해서는 표창·구휼하여 본보기로 삼았다. 조선은 중국과는 달리 良賤交媾이 만연하였으며, 노비소송·限品敍用과 관련하여 종부법·종모법 등이 논의되었다. 노비의 범위를 어디까지 규정하느냐의 논의는 결국 세수·군역 확보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와 신분질서 유지의 중요성 중 무엇을 중시하느냐

의 문제였다. 종종 무렵 결국 ‘及良民’ 세 자를 써서 양인의 천첩자녀의 보충대 입역을 허락하되, 良夫-婢妻 소생에겐 적용하지 않는 타협책으로 귀결되었다. 관원의 천첩자손·서얼의 관료 진출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 규정을 두었으며, 사족 지배체제가 확립됨에 따라 국초에 비해 점차 혜택은 줄이고 제한을 증대하였다.

제5장에서는 조선 전기의 경제구조 관련 법제의 양상과 노비소송·부민고소·전가사변 등 신분 변동 양상에 대해 다뤘다. 조선은 농업의 장려를 통해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금주령·도축 금지령 등을 제시하였고, 저화와 동전을 중심으로 한 화폐개혁도 단행하여 사용을 독려하는 각종 제도를 시행하였다. 다만 저화의 경우 가치가 폭락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그 결과 조선 전기에는 명목화폐인 저화는 收贖의 경우에만 주로 쓰이고, 대개는 현물화폐가 선호되었다. 한편 왕조교체기 급격한 신분질서의 변동은 노비소송의 폭증으로 이어졌다. 노비소송의 기한과 면천 기준을 규정한 것은 이 때문이며, 국가와 노비 주인의 입장을 절충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노비 문제·재심청구·경제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있어서 신문고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연산군 무렵 擊鼓는 거의 사라졌다. 대신 임금의 행차 때 뛰어어들어 아뢰는 擊鐃이 등장하였는데, 수차례 금지되었음에도 후기까지 근절되지 않았다. 한편 부민고소 금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국왕을 대리하는 수령의 지방 통치력 강화를 위해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하였다. 全家徙邊은 세종대 개척한 4군 6진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서 죄인을 변방 개척에 활용한 형벌이었으며, 조선에서 구체화된 법제였다. 유랑민·도망노비 및 죄수 등 다양한 부류가 해당되었으며, 반인륜적인 범죄나 경제사범에게도 적용되었다.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나 특정 사유로 인해 감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가사변에 처하기도 하였는데, 연산군의 폭정에 악용되기도 하였다. 물론 전가사변 자체에 대한 반발도 적지 않았으므로, 남설된 법조문에 대한 재정비와 축소가 이루어졌다.

마지막 제6장에서는 국가조직 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있다. 품계는 정·종으로 1~9품을 나누어 총 18품이며 6품 이상을 또 상·하계로 나누어 총 30계에 이르렀다. 또한 크기는 동반(문반)·서반(무반)으로 나누고 正職·雜職·土官職 등을 세분화하였다. 중앙 핵심 직위는 1~2품인 재상이 도맡았으며 이들의 죄를 묻기 위해선 우선 임금에게 계문하여 처분하여야 했다. 반면 품계는 낮아도 명예로운 직책으로 인식된 兩司 등은 청요직이라 하여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밖에 상피, 분경금지, 복식 관련 규제, 면신례 관련 규정도 존재하였다. 지방제도 역시 개편되었는데, 고려대에 屬縣이었던 곳까지 군현의 통폐합 및 지방관 파견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감찰·시찰관에서 행정장관으로 변모한 관찰사를 중심으로 한 8도 체제가 갖추어지기 시작했고, 중앙의 지방장악이 강화되었다. 조선의 지방장관격인 관찰사는 明의 승선포정사와 유사했으나, 지방 군정을 담당한 절도사를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방체계로는 진관체제가 행해졌다. 우선 중앙의 군사력 장악과 훈련을 위한 講武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외적 출몰 지역은 읍성을 쌓아 방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절도사가 主鎮에 위치하여 그 밖의 巨鎮·諸鎮을 관할하였다.

본서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고 史料를 바탕으로 하여 조선 전기 국법체계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리를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경국대전》·《대전속록》 등의 법제자료는 물론이거니와 관련 실록 기사와 각종 역사서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법이념의 도입과 형성, 그리고 적용 과정을 정리한 저자의 시도는 법제사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유용한 작업이다. 매 페이지마다 촘촘하게 인용되어 있는 각주, 권말에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는 각종 도표, 동서고금을 넘나드는 방대한 참고문헌 등은 저자의 ‘知的 誠實性(intellectual integrity)’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연대기자료와 법전류를 중심으로 많은 사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리한 官階에 따른 差待나 수속액의 변화 등은 평자도 관심이 있어서 정리해 보고 싶었던 것들이다. 수속액의 변화에 관해서는 기존 연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¹⁾ 저자의 표(320-321면)가 더

자세하다. 즉 더 많은 기사를 찾아내었고, 실록 明記 여부도 구분하였다. 이외에도 여러 소주제에 관하여 살살이 찾아서 정리한 걸 보니,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인적으로는 《대명률》 전체 460개조 중 실록에서 실제 활용 사례를 찾을 수 있는 것은 232개조이고 『典律通補』에는 203개조만 수록되었음을 밝혀낸 것(151면, 485-498면 부표 7), 그리고 ‘照律’은 후대로 오면서 ‘依律’과는 구별되고 ‘擬律’·‘按律’과 함께 “사건에 근접한 율문을 살피는 것”이란 의미로 쓰이게 되었음을 지적한 것(151-152면)이 인상적이었다. 아울러 만약 이와 같은 작업이 조선 후기 국법 체계에 대해서도 이뤄진다면, 갑오개혁 이전 한반도 국법체계 전반에 대한 더욱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책에는 문제로 지적할 사항도 적지 않다. 첫째, ‘법치주의’라는 용어의 오용이다. 본서의 곳곳에 ‘법치주의’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전체적 취지를 보면 저자는 조선이 입법에 의하여 개혁을 진행하고 법으로 통치한 것을 내세워 조선이 법치주의 국가였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래에 그 중 한 부분만 인용해 본다.

『경제육전』의 반포로 조선은 이전 시대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새로운 정치 운영 체제를 갖추었다. 고려 사회에서도 법치는 주요한 국가 운영의 기틀이었으나 전체 국법이 하나의 체계 속에 명문화되어 국가 운영의 중심으로 기능하지 못하였다. 고려 조종의 성현도 막연한 국초의 제도를 회복하지는 내용이었지 구체적인 법전을 지칭하지는 않았다. 반면에 조선은 국가의 건설과 동시에, 명시적으로 지목 가능하고 구체적인 국가의 근본 법제를 만들었다. 이는 법치주의 구현의 일대 혁신이었다.

(108면)

그러나 조선이 개별적·단편적 王法만이 아니라 《경국대전》을 비롯한 ‘통일적·종합적 성문법전’을 갖춘 중앙집권국가였다는 점에서 고려와 구별

1) 조지만, 『조선시대의 형사법-대명률과 국전』(景仁文化社, 2007), 22-23면.

된다고는 하여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의 지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래 ‘법치주의’·‘법치국가’는 서구 근대 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개념으로, 17세기 영국에서 확립된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과 이후 19세기 독일에서 등장한 ‘법치국가(Rechtsstaat)’ 이론에 바탕을 둔 것으로서, 모든 국가행위는 국민의 대표인 의회가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에 기속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실질적 법치주의라고 하고, 이때 ‘법치’는 ‘법이 지배하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나 저자가 법치주의라고 한 것은 형식적 법치주의이고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이다. 저자의 이러한 인식은 “폭군 연산군조차 악법을 입안하여 초월적인 통치를 행하였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조선이 법치주의에 기반한 국가였음을 반증한다.”(382면)라고 한 서술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저자가 생각하는 법치주의-조선의 법치주의-는 단순히 ‘사람이 법에 의하여 지배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위에서 살펴본 실질적 법치주의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법치주의를 이 책에서는 형식적 의미로 사용하겠다는 전제도 없이 제목부터 『법치국가 조선의 탄생』으로 정하고 조선의 ‘법치’를 강조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유교적 법치주의”(124쪽)라는 표현은 현대적 의미의 법치주의와는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라고 본다.

둘째, 조선시대에 ‘헌법(constitution)’이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다. 저자는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을 ‘국법’이라 하고 이를 ‘constitution’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하였으며(14면 각주 3), “현대적인 용어로는 ‘헌법(憲法)’에 해당하는 단어가 사실상 ‘대전’으로 지칭되었다.”(142면)라거나 “후속 세대의 법의식에서 거의 현대 헌법에 해당하는 지위를 누렸다.”(22-23면)라고도 하였다. 또 이들 법전을 “최상위 법전”(22면) 또는 “국정 운영의 최상위 법”(23면)으로 칭하고, “모든 법제를 대상으로 최상위 지위에서 통할하는 법”(22면)이라 하였다. 이에 따라 “‘대전’의 편찬은 법조문의 총위를 전면적으로 재조정하는 사업”(122면)이라 하였으며, “『經國大典』에서 법전명을 이루는 ‘대전’과 구조를 이루고 있는 ‘육전’의 용례는 연원이 다소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經國大典』의 ‘대전’은 주로 『書經』에서 천자의 통치 수단의 일환인 추상화된 보편법[典]의 개념을 기본 전제로 하고, 『周禮』의 ‘육전’이나 『書經』의 ‘오전’과 같은 구체적인 하위법의 개념을 함께 참고하여…”라 하였다(136면). “조선의 국법체계는 『經國大典』(성종 16, 1485)의 좌·우익을 보좌하는 『國朝五禮儀』(성종 5, 1474)와 『大明律直解』(태조 4, 1395)²⁾ 외에도, 종적으로 하위법의 기능을 하는 속록류도 만들었다.”(145면)라고도 하고, 또 “『經國大典』은 육전으로 구성되어 실무 법규가 중심이다. 그래서 이를 두고 육조의 행정 실무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오해되어 왔다.”(136면; 강조점은 평자)라고도 하였다. 저자의 견해를 정리하면, 《경세육전》·《경국대전》·《大典會通》과 같은 것은 최상위법으로서 헌법의 지위를 가지고 《대전속록》이나 《대전후속록》은 그 하위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최상위법을 반드시 헌법이라 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어떤 법을 헌법이라고 하려면, 헌법으로서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경국대전》은 저자도 인정한 바와 같이 실무 법규가 중심으로, 이 중에는 행정 실무와 관련된 세세한 규정도 적지 않다. 물론 헌법에는 통치기구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규정들, 그리고 법률에나 적합한 규정들도 들어갈 수 있으나, 《경국대전》의 경우 극히 일부(吏典)의 일부를 그나마 헌법으로 볼 수 있을 뿐, 전체를 헌법이라 할 수 있을 것인지는 매우 회의적이라 하겠다. 둘째, 《경국대전》과 《대전속록》·《대전후속록》의 관계를 과연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로 볼 수 있는지는 것이다. 저자는 元 文宗 때의 《經世大典》을 거론하면서 “최상위의 종합 법전을 의미하는 ‘대전’이라는 개념은 차용된 듯하다. 더욱이 명 초기 일종의 백과사전(類書類)에 해당하는 『永樂大典』…”(129면)이라고 하여, 大典이 최상위 종합 법전의 의미가 아님을 스스로 인식할 기회가 있었다. 원의 《경세대전》이 종합 법전인 것은 ‘대전’이 종합 법전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경세’를

2) 《國朝五禮儀》와 《大明律直解》가 《經國大典》의 좌·우익을 보좌한다는 서술까지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에 동의한다. 그리고 이것이 상위법-하위법의 관계와는 무관하다는 점은 저자의 서술에서 이미 명백하다.

위한(→법전) ‘대전’(→종합)이기 때문이다. 또 成宗이 “『經國大典』은 항상 따라야 하는 법이고 교서는 일시의 특명이니 교서를 따르라고 하였”으므로(191면),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 저자 스스로 《대전속록》과 《대전후속록》이 “모두 『經國大典』에서 미처 살피지 못했던 사안들이 새로이 대두하여 이를 처리하기 위해 내려진 수교를 집대성한 결과물”이(145면; 강조점은 평자)라고 하였는데, 이 인용문에서 평자가 강조한 부분 역시 ‘대전’과 ‘속록’이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가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 《경제육전》과 《경국대전》의 가치와 의의는 위에 인용한 108면의 서술에서 찾아야 하며(물론 ‘법치주의’라는 용어에는 문제가 있지만), 최상위법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헌법’이라고 칭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셋째, 삼복과 삼성추국에 대한 오해이다. 이는 첫째 및 둘째의 문제점과는 달리 부분적인 것이라 하겠다. 저자는 삼성추국을 “의금부가 주관하는 추국의 연장”(200면)이라 하면서, “삼복에서 형조가 맡던 역할을 삼성추국에서 의금부가 대신한 것”이라고 하였다(205면). 앞의 서술도 다소 문제가 있지만, 특히 뒤의 서술은 삼복은 ‘3회’ 하는 것이고 삼성추국은 ‘3기관’이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저자는 삼복을 정기적 최고 법정으로 보고 삼성추국을 비상설 최고 법정으로 보았기 때문에(206면; 352면에도 “최상위 법정에 해당하는 삼성추국”이라 함) 이를 근거로 양자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것 같은데, 삼복이든 삼성추국이든 최고 법정이라 할 수 없다. 삼성추국부터 보면, 평자의 박사학위논문은 강상죄와 관련해서만 삼성추국을 다룬 것이 아니라 삼성추국의 대상·참여인원·절차를 모두 다룬 것인데, 저자는 강상죄 관련 章節의 각주에만 이 논문을 소개하고(175면 각주 422) 정작 삼성추국 관련 章節에서는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 이 논문에 의하면 삼성추국은 최고 법정이 아니고 추국이 최고 법정이었다. 이보다 앞선 연구에서도 비록 용어상의 혼동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삼성추국이 최고 법정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³⁾ 저자는 삼

3) 吳甲均, 『朝鮮時代司法制度研究』(三英社, 1995), 43-56면.

성추국을 최고 법정으로 보았기 때문에 후대에 삼성추국이 강상범죄‘까지’ 맡은 것으로 보았으나, 사실은 삼성추국이 강상범죄‘만’ 맡았다. 다음으로 삼복을 정기적 최고 법정이라 한 것도 적절치 못하다. 삼복은 상복을 3회 하는 것으로, 상복을 정기적 최고 법정이라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저자가 삼복과 삼성추국을 최고 법정으로 본 것은 그 주관기관이 형조와 의금부였으므로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이 균형적이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삼복은 아니더라도 상복을 최고 법정으로 인정하면서 삼성추국은 최고 법정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두 기관의 역할 분담에 불균형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균형을 걱정할 필요는 없으니, 저자의 인식에 문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이다. 즉 상복은 형조가 주도 또는 주관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복에서 형조판서는 상복 대상 사죄수를 보고했을 따름인데, 의금부의 주장인 판의금부사도 그 수가 형조만큼은 아니지만 사죄수를 보고하였다. 형조의 사죄수를 먼저 보고하고 의금부의 사죄수를 나중에 보고하였다. 보고만 하는 것을 주관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형조판서와 판의금부사의 사죄수 보고 이후로는, 정승·판서·승지 등이 각자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각 사죄수를 죽일지 살릴지를 임금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넷째, 역시 부분적인 것인데, 일부 오역과 오해를 지적하고 싶다. 오역과 오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며, 저자가 틀렸고 평자가 옳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저자가 조선의 현실과 배치되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이 어떠한 번역이나 해석을 근거로 한 것이라면, 특정 시기에 보이는 특수한 사정을 일반화한 오류이거나 오역·오해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평자는 오역·오해라고 보았으며,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오역이다. 176면에서 저자는 ‘부모·조부모·구고·부·백숙부모·형·자’ 중 ‘구고’를 장인과 고모로 번역하였는데, 이는 시부모가 옳다. 저자는 이 번역을 근거로 177면에서 “『대명률』에서 ‘남편의 조부모나 부모’, ‘외조부모’가 조선에서는 ‘장인’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분석하였는데, 피살자의 신분 때문에 형벌이나 절차가 가중됨에 있어 그 피살자에서 시부모를 빼고 대신 장

인을 추가한다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즉 시부모 살해는 가중하지 않으면서 장인 살해는 가중한다는 것이 유교국가 조선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또 장인만 추가하고 장모를 추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구고’를 시부모로 번역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없게 된다.

다음으로 오해인데, 181면 둘째 문단의 서술은 180면의 ㉠과 ㉡을 오해했기 때문에 내린 잘못된 결론이다. 181면에서 저자는 『대명률』의 존장에 대한 고소와 무고죄가 조선의 강상범죄 중 ‘정리가 매우 중한 죄’로 수용되었다. 명률에서는 존속에 대한 고소 행위 자체로 처벌인 데 반하여, 조선에서는 노비 소송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명시함으로써 구체화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아비를 서얼 삼촌이나 어미를 숙모라고 일컬으며 노비 소송을 일으키는 것’(㉠)과 ‘서얼을 면하고자 적모나 외조모를 타인의 노비라고 일컫는 것’(㉡)은 부모나 외조모를 고소·고발하는 것이 아니므로, 저자가 인용한 《대명률》의 간명범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노비인 부모를 부모가 아니라 주장하여 자신이 노비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고(㉠), 자기가 적자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첩인 친모를 본처라 주장하고 이에 따라) 적모를 친첩이라 주장하는 것이다(㉡). 자신의 신분을 속이기 위하여 관청을 속일 뿐 아니라 부모를 부정하기까지 하니, 강상범죄일 뿐 아니라 이에서 나아가 정리가 매우 중한 것에 해당하였던 것이다. 존속에 대한 고소가 강상범죄인 것만은 분명하나, 180면의 ㉠과 ㉡은 존장에 대한 고소이기 때문에 강상범죄인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강상범죄였던 것이므로, 존속에 대한 고소 행위 중 노비 소송과 관련된 범죄행위에 한정하여 ‘정리가 매우 중한 강상범죄’로 한 것이라는 결론이 여기서 도출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본서의 구성 체계에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본서 제5장의 “2. 사회 신분의 변동 양상”은 구체적으로 노비소송·신문고·격쟁·부민고소 금지조항·전가사변을 다루고 있는데, 이들 개별 요소들을 제5장의 전반적 주제인 ‘사회경제구조의 개편’은 물론이거니와 ‘사회 신분의 변동 양상’이라는 소주제로 묶는 것이 적절한 구성인지 의문이다. 격고·격쟁·부민고소·전가사변이 모두 노비 관련 쟁송과 관련되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

항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이지만, 본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전가사변만 보더라도 반인륜범죄·경제사범·신고의무 위반 등 다양한 범죄에 적용되었다. 따라서 이들 항목을 별도의 소주제로 분류하거나, 적어도 이들 요소가 '사회 신분의 변동 양상'이라는 주제와 어떤 면에서 관련이 있는지를 좀 더 부각시켰더라면 좋았을 것이다.